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2018. 12.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2018. 12>

본서(PDF)는 2015.12.2. 개정 소득세법과 2017.12.16.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및 2018.12.8. 개정 소득세법의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규정 및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납세 준비를 위한 안내용 책자입니다. 본서의 저작권은 (사)한국교회법학회에 있으며 내용을 무단 복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나 기타 연락은 (사)한국교회법학회(www.churchnlaw.co.kr, ☎1600-9830)로 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목 차]

I.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1. 종교인소득 과세
2. 퇴직소득 과세
3. 종교인소득 과세의 특징

II. 종교인과세의 대상: 종교인

III. 과세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
1. 과세 대상소득
2. 비과세 소득

IV. 종교인소득 신고와 근로소득 신고
1. 신고소득의 선택
2. 어느 쪽이 세액 면에서 유리한가 ?
3.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

V. 원천징수와 개인종합소득신고
1. 신고납부의 선택
2. 원천징수
3.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4. 지급명세서

VI. 저소득 목회자에 대한 세제 혜택
1. 근로장려금
2. 자녀장려금

VII. 교회와 목회자의 준비사항
1. 고유번호증 발급
2. 교회정관과 재정규칙의 정비
3.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구비
   *교회 모범정관 및 재정규칙(안)
4. 구분기장·관리
5.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관리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 적용

VIII. 종교인과세에 관한 정보와 자료
1. 『종교인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
2. 종교인과세 교육용 동영상
3. 종교인과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4. 종교인과세공동TF/한국교회법학회

I.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1. 종교인소득 과세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종교인소득 과세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2017년 12월 26일 시행령 개정안과 재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종교인소득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 소득** : 종교관련 종사자(기독교=목회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하고, 종교인소득 중 종교활동과 관련한 본인의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보육비 및 사택제공이익을 비과세 소득으로 하였다. 특히 교회가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즉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하였다.

■ **납부방법** : 종교관련 종사자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과세 표준신고하는 납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3월에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소득 선택** : 종교인은 종교인소득 신고 또는 근로소득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종교인들도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있어 직장가입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질문조사권** :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외에 종교활동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였다.

■ **시행시기** :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2018년 1월분 종교인(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부터 종교단체(교회 등)는 매월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신청을 득한 경우에는 6개월분을 모아서 2018년 7월과 2019년 1월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납세신고 할 경우에는 2019년 5월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1년 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정산하면 된다.

2. 퇴직소득 과세

종교인들은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소득과 함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퇴직소득이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현금과 현물)을 말하는데 목회자들이 퇴직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아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지급과 소득신고를 미룰 것을 권한다. 다른 직업군(공무원 등)과 동일 직업군(2018년 이전 퇴직한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선례를 볼 때, 현재 종사하는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는 2018년 1월부터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 사료된다.

3. 종교인소득 과세의 특징

종교인소득 과세는 이를 위한 특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중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하는 법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하면, 소득의 유형을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여기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소득세법이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각 소득에 따라서 비과세항목이나 필요경비의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있다. 원래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의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개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사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 종교인들이 근로자로 취급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고려하고 또 근로소득보다 필요경비 등을 많이 인정하여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종교인소득 과세를 비종교인의 소득과세와 비교해보면, 종교인소득은 ① 필요경비를 더 많이 인정하여 세액 면에서 유리하고, ② 근로소득 신고와 종교인소득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③ 세무신고 및 납세방법에 있어서도 원천징수와 개인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천징수시에 반기별 납부특례가 인정되며, ④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개인소득 관련 자료에 한정하고 세무신고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기시정 기회를 먼저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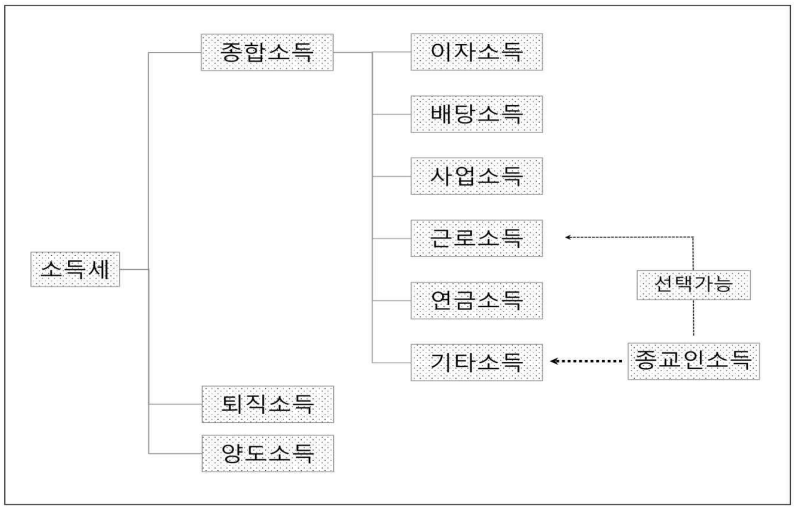

II. 종교인소득 과세의 대상 : 종교인

종교인소득 과세의 대상은 '종교인'이다.

종교인이라고 함은 종교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종사자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248)'를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목회자로서의 목사와 전도사, 그 이외의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강도사가 있다.

목사(24811)는 "기독교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목사에는 담임목사, 원로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교목, 원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목사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각 종교단체(교단)에 맡겨져 있고 이를 국가의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전도사(24892)는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율동·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교회사무직에 종사하는 관리집사, 기사 등은 종교인이 아니므로 이들은 소득형태에 따라 종교인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항존직인 장로, 권사, 집사 등은 무보수봉사 직이므로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존직들이 성가대를 지휘하거나 반주를 맡거나 주차봉사를 하고 약간의 사례

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교회의 공적 경비로서 종교인소득 과세와는 무관하다. 다만 이들에게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 형태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표] 과세 대상 종교인 범위

<table>
<tr><th>구 분</th><th>명 칭</th><th>지위 및 역할</th><th>과 세 내 용</th></tr>
<tr><td rowspan="8">종교인
(목회자)</td><td>담임목사
(위임목사)</td><td>지교회의 청빙으로 위임을 받아 교회사역 전반을 담당하는 목사(교리 해설과 설교, 종교의식집행)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근로자성 부인, 민법상 수임인)</td><td>-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td></tr>
<tr><td>부목사</td><td>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교리의 해설과 설교, 종교의식 집행) 근로자성 부인, 민법상 수임인</td><td>-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td></tr>
<tr><td>강도사</td><td>강도(설교) 인허 받은 목사후보생</td><td rowspan="3">- 특정교회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받으면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근로자성 부인)
- 교육전도사 중 신학생으로서 정기적인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 과세대상 아님</td></tr>
<tr><td>전도사</td><td>목사를 도와 종교의 가르침과 교리를 전하고 청소년이나 초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 율동, 음악 등을 담당</td></tr>
<tr><td>교육
전도사</td><td>교육기관(주일학교 포함)에서 신앙을 지도하고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자</td></tr>
<tr><td rowspan="3">기타</td><td>원로목사, 은퇴목사</td><td>- 퇴직 후에도 소속교회 또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사례금을 받을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td></tr>
<tr><td>협동목사, 기관목사 등</td><td>- 특정교회나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사례비를 받으면 종교인소득과세 대상</td></tr>
<tr><td>선교사(교회가 직접 파송한 경우) 등</td><td>- 소속교회에서 정기적 사례비를 지급할 경우는 과세
- 교회가 파송하지 않은 해외선교사에 대한 지원은 선교비로서 비과세</td></tr>
</table>

항존직원	장로, 권사, 집사,	- 봉사직으로 무보수
비종교인	반주자, 지휘자	-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 목사, 전도사 자격자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사무행정 직원, 관리집사, 경비, 운전 기사 등	- 근로소득 과세

III.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1. 과세 소득

종교인이 종교활동으로 인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과세 소득이다. 종교인소득은 각 종교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지만 기독교의 경우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비(생활비)를 가리킨다. 그 명목은 사례비, 상여금, 수양비, 직책수당, 체력단련비, 연구비, 격려금 등이 있다.

종교인소득인 여부는 지급항목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종교활동과의 관련성과 종교인에게 그 처분권이 위임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적으로 판단한다. 일단 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종교인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종교인소득으로 보게 될 개연성이 크다.

목회자가 소속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나 외부 기관(대학, 방송국 등)에서 받은 강연료, 부흥회 인도비 등은 종교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 이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교회나 단체에서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따로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다만 목회자는 자기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은 사례비 총액과 외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목회자들이 신도로부터 받은 심방사례비나 주례비, 개인 후원금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후원금이 거액일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

종교인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종교인소득 과세와 함께 2018년도부터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된다. 퇴직소득이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하며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결정되기 까지 미루는 것이 좋다.

2.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이란 종교인이 받는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여기에는 종교활동과 관련한 본인의 학자금, 식대, 실비변상적 지급액(차량유지비, 종교활동비 등), 출산보육비, 사택제공이익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한 달에 총 800만원을 사례비로 지급받았는데 이중에는 600만원은 순수 사례비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학자금, 개인카드로 미리 지급한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례비 600만원은 개인소득으로 과세되고, 200만원은 그 내역을 명시하면 비과세가 된다.

2.1. 학자금

목회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가리킨다. 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학교 M.Div. 과정 또는 신학·철학 석.박사 과정(Th.M, Th.D. Ph.D.)의 등록금, 입학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말하므로 본인이 아닌 사모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과세 소득이 된다. 그러므로 자녀 등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2.2. 식대

목회자에게 소속 종교단체(교회)가 제공하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은 얼마가 되든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매월 일정액을 식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소득이고 그 이상의 지원은 과세 소득이다.

교회등 종교단체가 소속 목회자에게 손님 접대용 식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식비가 아니고 일종의 접대비에 속한다. 이는 다음에서 말하는 실비변상적 지급액으로서 별도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2.3. 실비변상적 지급액

목회자가 지출한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교회로부터 변상 받는 비용을 말한다. 이

러한 비용은 목회자 개인이 처분 가능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한다. 여기에는 ① 일직비, 숙직비 ② 여비, 교통비 ③ 종교활동비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이 포함된다.

■ **출장비, 여비** : 목회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출장비 즉, 선교여행이나 해외교회 초청 설교, 성지순례비용 등에 한정되어 비과세이지만, 반대로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의 여비 등을 교회가 지원하면 과세소득이 된다.

■ **차량유지비** : ① 교회소유 차량을 목회자에게 제공한 경우 차량의 금액, 유지비 등에 아무런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이다. ② 교회명의로 렌트카를 마련해서 목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렌트카 비용을 교회가 부담해도 목회자의 소득이 아니므로 전액 비과세이다. 그러나 ③ 목회자가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종교단체의 종교관련 활동에 이용하고 종교단체로부터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은 영수증 없이 월 20만원 까지만 비과세 소득이다. 따라서 교회형편상 목회자 개인소유의 차량을 목회에 사용하고 일정액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 **종교활동비** : 목회자가 소속 종교단체(교회 등)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즉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는 비과세이다. 다만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이 아닌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종교인의 종교활동비를 그렇게 공적으로 구분회계하여 관리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해 3월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명세서에 사례비와 함께 그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세무조사도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종교활동비는 철저히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종교인을 통해 사용토록 해야 지급명세서 기재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4. 보육비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자녀의 연령상한 기준은 소득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2.5. 사택사용이익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시용이익은

비과세이다.

그러나 종교인이 자기 소유의 주택에 살면서 소속 종교단체(교회 등)로부터 일정액을 사택비 명목으로 지급받으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교인소득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교회에서는 목회자 사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교회가 목회자에게 일정액을 사택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정부와의 종교인과세협의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표] 종교인의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대비표

소득항목	과 세	비과세
사례비(생활비)	- 사례비, 상여금, 수양비, 의료비, 체력단련비, 연구비, 교단연금적립금, 도서비 등 -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사례비로 간주	- 도서비 등을 교회의 공금으로 구입하면 종교인소득과는 무관한 교회의 비용으로 비과세
종교활동비 :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과 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 종교활동비를 목회자의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장·관리(교회명의 통장, 카드)하지 않고 목회자에 직접 지급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총액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서 신고해야 함. - 지급명세서에 기재한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대상	- 종교활동비의 명칭은 목회활동비, 목회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지원금, 접대지원금, 판공비, 기밀비, 경조사비, 통신비 등 다양 -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장·관리(교회명의 통장, 카드 사용) - 지급명세서 총액 기재 및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
식 대	- 식대명목으로 목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월 10만원 초과금액	- 목회자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식대는 제한 없이 비과세 - 식대명목으로 목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월 10만원 이내 - 목회활동을 위해 목회자가 신도와 식사비용으로 지출증빙을 갖춘 경우는 종교활동비로 비과세
출장비, 여비	-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 중 실비변상 비용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정산된 금액
차량유지비	- 목회자 명의 차량을 목회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초과 지원금 - 렌트카 사용비용 지원	- 교회명의 차량 사용, 공과금 - 목회자 명의 차량을 목회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 지원금
4대 보험료	- 종교인들도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장가입 적용 받게됨.	- 보험료 50% 교회지원 비과세 ※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며 고용 산재 적용대

	- 보험료 절반은 교회, 절반은 목회자 개인부담	상 아님.
사택제공, 공과금	- 목회자 소유 집에 살면서 교회로부터 사택비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 교회소유사택을 목회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교회가 임차하여 사택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학자금	- 목회자 본인 : 종교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자금: 최고경영자과정(AMP), 경영대학원(MBA) 등록금 - 자녀 학자금 :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목회자 본인 : 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과금 - 자녀 :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육비		-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지원금 또는 6세 이하의 보육지원금
퇴직금, 연금적립금	- 일시 지급 퇴직금 **(현재, 과세기준일 미확정)** - 교단 연금적립금	
부흥회, 외부강사료 등	-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기타소득 과세(종합소득세 신고)	
심방사례비, 주례사례비		- 종교인소득이 아님

IV.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와 근로소득 신고

1. 신고소득의 선택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자진신고 하던 종교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은 과세표준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인소득세/근로소득세 비교]

<table>
<tr><th></th><th>종교인소득</th><th>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th></tr>
<tr><td>과세소득</td><td>종교인이 종교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td><td>종교인이 종교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td></tr>
<tr><td>비과세소득</td><td>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td><td>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td></tr>
<tr><td>필요경비</td><td><table><tr><td>종교인이</td><td>필요경비</td></tr></table></td><td><table><tr><td>총급여액</td><td>근로소득공제금액</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또는
근로소득
공제</td><td><table><tr><th>받은금액</th><th></th></tr><tr><td>2,000만원 이하</td><td>80%</td></tr><tr><td>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td><td>1,600만원 +
2,000만원
초과의 50%</td></tr><tr><td>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td><td>2,600만원 +
4,000만원
초과의 30%</td></tr><tr><td>6,000만원 초과</td><td>3,200만원 +
6,000만원 초
과의 20%</td></tr></table>예) 소득 5,000만원인 경우
2,900만원 필요경비인정</td><td><table><tr><td>500만원 이하</td><td>총급여액의 70%</td></tr><tr><td>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td>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td></tr><tr><td>1,500만원 초과
4,500만원이하</td><td>750만원+1,500만
원초과액의 15%</td></tr><tr><td>4,500만원 초과
1억원이하</td><td>1,200만원 + 4,500
만원 초과액의 5%</td></tr><tr><td>1억원초과</td><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tr></table>예) 소득 5,000만원인 경우
1,225만원 소득공제</td></tr>
<tr><td>소득공제</td><td>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창업투자조합출자금, 개인연금저축</td><td>(좌 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td></tr>
<tr><td>세액공제</td><td>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 전자신고공제(2만원)</td><td>(좌동, 표준공제는 13만원) + 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 소득세액공제</td></tr>
<tr><td>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td><td>신청 가능</td><td>신청 가능</td></tr>
</table>

2. 어느 쪽이 세액 면에서 유리한가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 세액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음의 [표]를 보면 된다. 이를 보면 4인 가족 기준 연 3천만원정도 까지는 큰 차이가 없고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인소득 신고가 유리하다. 이는 종교인소득이 필요경비를 근로소득보다 더 많이 인정받기 때문이다.

[소득수준별 종교인소득/근로소득 세액비교] (단위 원)

연지급 (단위 천원)	월지급 (단위 천원)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자녀1	
		종교인	근로자	종교인	근로자	종교인	근로자
20,000	1,667	1,000	12,220	0	7,720	0	0
30,000	2,500	35,040	41,630	12,540	28,600	1,000	13,150
40,000	3,333	83,630	120,210	61,130	95,210	16,130	45,740
50,000	4,167	163,230	233,600	140,730	205,470	95,730	126,690
60,000	5,000	248,520	353,910	226,020	325,150	181,020	237,550

70,000	5,833	347,740	490,760	325,240	443,770	280,240	343,330
80,000	6,667	468,620	706,100	446,120	658,100	401,120	506,050
90,000	7,500	595,000	896,610	570,000	847,600	522,080	683,460
100,000	8,333	726,200	1,082,590	701,200	1,032,590	651,200	856,640

* 부양 가족수 산정에 있어서 20세 이하의 자녀는 1인을 2인으로 계산

3.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초기에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담임목사의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으로, 부교역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목회자는 담임목사이든 부교역자이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신분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종교인이 근로소득 신고를 한다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소득 신고의 전제로 종교단체(교회)와 목회자들간에 근로계약(고용계약)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 문제나 노동조합의 결성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이외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세액의 유불리를 떠나서 담임목사는 물론이고 부교역자들도 모두 '종교인소득'으로 납세 신고할 것을 적극 권면한다.**

[종교인소득신고/근로소득신고 대비표]

		종교인소득신고	근로소득신고
공통점	과세 소득	- 종교인이 종교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납부방법	-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또는 개인 종합소득신고 중 선택 - 원천징수시 반기별 납부 신청 특례	
	비과세소득	- 종교활동비(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 비과세	
	지급명세서	- 다음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 제출 - 종교활동비를 목회자의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장·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종교활동비 총액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	
	세무조사	-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사례비)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종교활동비)을 구분하여 기록·관리·사용하는 경우 종교활동비는 조사할 수 없음. -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저소득 종교인이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근로, 자녀장려금 동일함.	

		- 종교인(근로) 소득이 없으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4대 보험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 종교인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시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신고 여부, 원천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직장가입 대상 자격이 부여됨 - 이때 보험료 50%는 교회, 50%는 목회자 개인부담 -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없음	
	종교인의 법적 지위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신고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는 직접 관련성은 없음 - 종교단체와 종교인간의 청빙계약(위임계약) 체결, 민법상 수임인 지위	
차이점	비과세소득/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	- 필요경비 공제 - 기타 상세한 차이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세/근로소득세대비]	- 근로소득 공제 - 기타 상세한 차이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세/근로소득세대비]
	세액계산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함 - 종교인소득신고/근로소득신고시 세액 차이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별 종교인소득/근로소득세액 비교] 참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함 - 종교인소득신고/근로소득신고시 세액 차이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별 종교인소득/근로소득 세액비교]

위 대비표에 따르면 국가에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2017년 12월에 법(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제 종교인들은 국가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굳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자격에 있어서도 종교인소득 신고와 근로소득 신고에 관계없이 목회자들은 모두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종교인의 소속 교회가 해당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V. 원천징수와 개인 종합소득신고

1. 신고납부의 선택

종교인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과세 표준신고 하고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교회행정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납세대상 종교인이 많은 중대형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편리하고 또 목회자가 일일이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인 목회자 교회나 소형교회에서는 어느 방법이든 큰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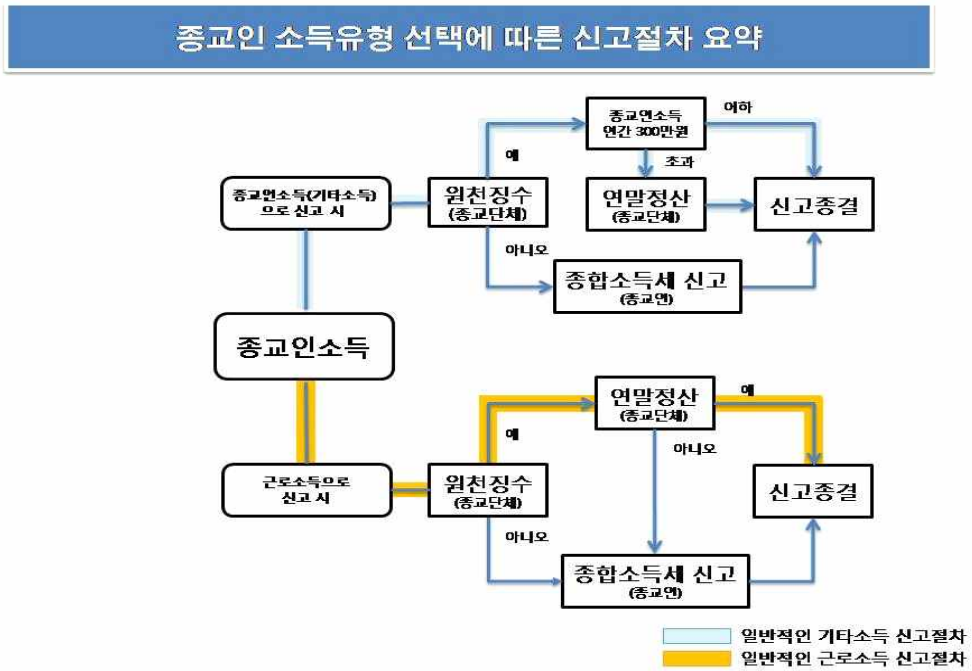

2. 원천징수

2.1. 원천징수의 뜻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교회)가 종교인이나 일반직원들에게 사례비 또는 보수를 지급할 때 세법 소정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개인이 일일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고 세무당국에서도 징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는 대부분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해 납부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종교단체(교회)는「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종교단체에 종교인 이외의 직원이 있는 경우 또는 종교인이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표는 표준세액기준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하여 과부족을 정산할 수 있다. 이를 가리켜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교회는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서식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서식②), 「종교인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서식⑥) ,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서식 ⑧)를 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소득과 함께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므로 원로목사나 퇴직목회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교회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한다. 다만 퇴직소득 과세기준일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퇴직소득의 지급과 소득신고를 당분간 미룰 것을 권한다.

2.2. 월별신고납부와 반기별 신고납부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매월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별 원천징수의 경우 신고납부는 다음달 10일까지이다. 그러나 소규모 기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고용인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반기별 신고납부의 특례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여 소속 목회자나 직원의 숫자에 상관없이 6개월씩 모아 7월과 1월에 년 2회 신고납부하면 된다.

반기별 신고납부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서식①)를 과세기간 개시 전(상반기 12월) 하반기(6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소득에서 미리 뗀(원천징수)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사용액은 물론,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따

라 결정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31.)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서식③)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내에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서식③)」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서식 (④)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법 155의6후단). 이와 같이 종교인과세의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종교인의 선택에 따라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법 155의6). 이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종교인들을 배려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한다.

종교인이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서식 ⑨)를 작성해야 한다.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서식 ⑧)을 작성해야 한다.

종교인이 그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가령 목회자가 소속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 외에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받는 사례비가 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식 ⑨)를 개인적으로 하여야 한다.

4.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란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의 액수와 종류, 지급시기, 연도 등을 기재하는 서식이다. 즉 종교단체(교회)가 종교인(목회자)에게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종교인의 인적사항과 금액, 지급일 등을 기재하는 서식이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여부, 면세점 이하의 소득인지 여부, 대상자가 당해 종교단체 소속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때 작성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사례비등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작성하여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목회자가 소속 교회에서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사례비를 받으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종교인(목회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교회)에서 공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기록하고 사용·관리하는 한 지급명세서에 그 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를 0.5/100로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2년간 적용 유예되었다. 그 유예 조항이 포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제외되었다.

[세무 신고·납부 시기 및 서류 일람표]

구분	세분	작성/제출서류	제출시기	비고
원천징수	월별 원천징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②)	- 다음 달 10일	년 12회 신고
		- 소득자별 원천징수부(⑤)		종교단체에 비치
		- 원천징수 영수증(⑥,⑧)	- 지급시	종교인에게 발급
	반기별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②)	- 반기별 납부신청서 : 12월, 6월 - 상반기 원천징수신고 : 7월10일 - 하반기 원천징수신고 : 다음 해 1월10일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특례인정(년 2회 신고)

		- 소득자별 원천징수부(⑤)		종교단체에 비치
		- 원천징수영수증(⑥,⑧)	- 지급시	종교인에게 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청**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③)	해당과세 기간종료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 연말정산용)(④)	다음 해 2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⑥,⑧)	다음 해 3월 10일	
	연말정산 포기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③)	해당과세 기간종료일	다음 해 5월 종교인이 종합소득확정신고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⑥,⑧)	다음 해 3월 10일	- 연말 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⑦)	다음 해 3월 10일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에 대한 지급명세서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⑨)	다음 해 5월 말일	- 교회가 원천징수 하지 않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년 1회) - 종교인소득신고 & 근로소득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⑨)	다음 해 5월 말일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⑩)	다음 해 5월 말일	종교인소득신고 & 근로소득신고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서식 목록]

번호	서식명	관련규정	내 용
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소득규칙 21호의2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
②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득규칙 21호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
③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소득규칙 25호의3	종교인소득세액을 연말정산 하려는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제출
④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용)	소득규칙 37호(2)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 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⑤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소득규칙 25호(4)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징수부에 기록하고 보관
⑥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3호(6)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⑦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발행자 보고용)	소득규칙 23호(4)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4호(4)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	소득규칙 40호(5)	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조특규칙 64호의2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VI. 저소득 목회자에 대한 혜택

2018년 1월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과 함께 종교인들도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족 재산과 소득수준이 일정기준에 이하인 근로자나 종교인에 대해서 국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저소득 목회자들은 과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지만 종교인소득 과세의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오히려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사업자로 한정되었으나 2017년 1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저소득 종교인들에게도 적용하였다. 따라서 종교인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종교인소득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저소득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매년 5월 1일~31일)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관련 신청서에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장려금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령안을 기준으로 함.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현행	**개정안**	비고
연령요건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 미만 단독가구 포함	3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소득요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85만원	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	300만원	
최대지급액 구간	단독가구	600~900만원	400~900만원	
	홑벌이가구	900~1,200만원	700~1,400만원	
	맞벌이가구	1,000~1,300만원	800~1,700만원	
지급방식		다음 연도 연 1회 지급	당해 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근로자 외는 연 1회
지급규모		166만 가구, 1.2조원	334만 가구, 3.8조원	

***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아님

2. 자녀장려금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령안을 기준으로 함. 국세청홈페이지 참조)

<table>
<tr><th colspan="3"></th><th col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안</th><th>비고</th></tr>
<tr><td colspan="3">가구요건</td><td colspan="4">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td><td rowspan="3">3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td></tr>
<tr><td colspan="3">소득요건</td><td colspan="4">연간총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td></tr>
<tr><td colspan="3">재산요건</td><td colspan="2">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
-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td><td colspan="2">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td></tr>
<tr><td rowspan="4">지급액</td><td rowspan="2">홑벌이가구</td><td>급 여 2,100만원 미만</td><td>지급액 : 자녀 1인당 50만원</td><td>급 여 2,100만원 미만</td><td>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td><td rowspan="2"></td></tr>
<tr><td>급 여 2,100만원~4,000만원</td><td>지급액:50만원 - (총급여액-2,100만원) * 1,900분의 20</td><td>급 여 2,100만월~4,000만원</td><td>지급액:70만원 - (총급여액-2,100만원) * 1,900분의 20</td></tr>
<tr><td rowspan="2">맞벌이가구</td><td>급 여 2,500만원 미만</td><td>지급액 : 자녀 1인당 50만원</td><td>급 여 2,500만원 미만</td><td>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td><td rowspan="2"></td></tr>
<tr><td>급 여 2,500만원~4,000만원</td><td>지급액:50만원 - (총급여액-2,500만원) * 1,500분의 20</td><td>급 여 2,500만원~4,000만원</td><td>지급액:70만원 - (총급여액-2,500만원) * 1,500분의 20</td></tr>
</table>

***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는 자녀장려금 적용대상 아님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VII. 교회와 목회자의 준비사항

1. 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란 납세의무자의 이동·변동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교회(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목회자)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등 종교인소득과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한다. 나아가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도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고유번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는 82번을 부여받고,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89번을 부여받는다. 82번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받아 은행에서 교회명의의 통장 개설과 법인카드 발급이 용이하다. 교회명의 통장으로 종교활동비를 관리해야 비과세가 되며 세무조사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나아가 직장단위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데에도 82번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다. (82번을 부여받을 경우 법인으로 간주하여 다음해 3월까지 출연재산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

2. 교회 정관과 재정규칙의 정비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해서는 교회(종교단체)의 정관 또는 재정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활동비를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과세로 하고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생활비로 지급되는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관이나 재정규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종교단체의 정관과 재정규칙에는 재정운용원칙, 회계원칙(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기장 관리한다는 규정 포함), 공동의회승인에 의한 예산결산 승인, 헌금의 관리와 교회명의 통장개설, 목회자 사례비와 보수의 책정과 관리, 종교활동비의 성격과 사용목적, 관리, 증빙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

3. 종교인(목회자)과 종교단체(교회 등) 구비

종교인		종교단체	
구비사항	상세내용	구비사항	상세 내용
종교인과세 기본은 “구분회계” 종교인소득 전용 통장 구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종교인 소득을 받는 종교인 소득 전용 개인통장	정관 및 재무회계 세칙	- 종교인과세에 맞는 새로운 교회 정관과 재정 세칙 구비 - 종교인 소득, 종교활동비 등 지급, 사용근거 마련 - 사례비와 종교활동비, 기타 교회의 재정구분 및 집행기준 마련 - 예산수립 및 집행 산정근거 마련 - 내외부 감사 정당성 판단기준 제공
종교활동비는 새로운 정관에 따라 소속 종교단체 통장 카드로 관리 사용	종교단체 명의로 만든 종교활동비 통장과 카드를 구비하여 종교인에게 정해진 종교활동비를 제공하여 공적 관리 사용	종교단체 구분회계	- 종교단체명의의 종교인소득 지급통장과 회계자료 - 종교인 종교활동비 통장과 회계자료 (종교단체 명의로 만든 종교활동비 통장과 카드를 구비하여 종교인 개인마다 정해진 종교활동비를 공적 관리 사용토록)
청빙계약서 급여계약서 지급명세서	소속 종교단체와 종교인 소득 증명	기록카드 청빙계약서 급여안	- 소속증명 여부 판단 - 청빙계약서(종교인소득신고) - 목회자 등 연봉 및 급여기준 마련 - 합리적 급여인상안 마련(예산확보용)
		지급명세서 작성 비치	- 목회자 등 급여명세서 작성 - 과세대상 및 과세소득 범위 결정(간이세액표 기준) - 국세청(세무서) 신고용 급여현황 및 세금자료 지원 - 목회자 건강보험료 및 연금 - 5년 이상 과세자료 비치 및 보관
각종 소득, 카드 자료 등	세무서 신고, 연말정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시 필요	원천징수 영수부자료 비치	- 정기 국세청(세무서) 제출자료 구비 - 근거과세 및 이행절차의 타당성 입증자료 활용 - 5년 이상 과세자료 비치 및 보관

[교회 모범정관 및 재정규칙(안)] *

* 모범정관은 종교인과세의 시행에 따라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재정/회계 관련 부분만 포함한 것임.
* 모범정관은 어디까지나 바림직한 정관의 예시이기 때문에 각 교단과 교회의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규모가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밑줄친 부분만 담은 간단한 정관도 가능함.

제1장 총칙

제00조(재정운용의 원칙)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는 다음의 원칙들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① **청지기적 사명:**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나라 확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관리할 권리와 책임(의무)을 가진다.

② **균형:**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운영비의 지출 비율은 목회방향에 따라 균형있게 지출되어야 한다.

③ **총액표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투명성:**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는 공시절차를 두어 교인 누구든지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건전성:** 재정구조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교회는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인 자금 공백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회(또는 제직회)의 승인을 얻어 단기간 차입할 수는 있다.
2. 반기(또는 회계기간)별 수입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출한다.
3. 매 회계연도별로 잉여자금이 남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하며(zero base),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선교 및 구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지 않는다.

⑥ **문서화:**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⑦ **기능의 분리:** 재정집행을 승인하는 기능, 집행하는 기능, 기록하는 기능 및 이를 사후 감독하는 기능은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제2장 회계 원칙

제00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00월 1일부터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00조(회계처리 방식) 교회의 회계처리는 단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조(구분기장·회계)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등)와 그 밖의 교회활동(목회활동비 포함)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제00조(회계서류의 보존연한 및 폐기)

① 각종 회계(재정)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법상 증빙의 소멸시효 5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보존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보존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당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제3장 예산 및 결산

제00조(예산)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은 목회자의 사례비 예산과 목회활동비 예산, 기타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범위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00조(결산 및 공시) 교회는 결산 감사종료 후 다음의 결산서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1. 예산서 2. (예산대비) 수입/지출 결산서 3. 재산현황표(=대차대조표) 4. 부속명세서(또는 재산 및 부채 목록) 5.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 6. 감사보고서

제00조(감사)

① 공동의회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한다.

②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감사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조서로 보관한다.

④ 교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감사의 감사보고내용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내부감사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외부전문가인 기독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00조(수입)

①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 헌물 및 기타수익으로 한다.

② 교회가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실비변상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제00조(헌금의 구분과 관리)

① 헌금은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절기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②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교회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헌금을 일괄 입급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회명의의 통장은 목회자 사례비 지급통장, 목회활동비 통장, 기타 교회운영비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④ 교회명의 통장과 목회자 개인 통장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지출

제1절 사례비 및 보수

제00조(사례비, 보수)

①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교역자인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③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하되, 개인별 사례 및 보수 일람표는 공동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교회는 교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이외에 '교직원복지비지급기준'등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조(퇴직금) 본 교회는 매 결산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중인 위임목사의 경우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당회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

제00조(성격) 목회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목회자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목회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조(사용목적)

① 목회활동비는 본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② 목회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목회자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2.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목회자·원로목사·미자립교회 교역자, 성도 및 지인 지원 등 대내외지원비와는 지출성격이 구분되는 개인적 목회사역
3.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시 식대선물 등 방법의 접대
4. 개인 목회에 도움을 준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5.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목회자의 품위유지를 위한 의복, 기타 물품구입
6.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7.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 목회자의 목회활동영역에 부합되는 제반사역

제00조(목회활동비의 확보)

① 목회활동비는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②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총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되,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00조(수령 및 관리) 목회활동비는 교회 명의의 '목회활동비통장'으로 입금하며, 목회활동비의 관리는 목회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00조(지출증빙)

① 목회활동비는 지출증빙이 필요한 경우,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활동비 전용 카드 또는 체크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한다.

② 목회활동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목회행정실, 또는 재정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

3. 구분기장·관리

3.1. 구분기장·관리 뜻

구분기장이란 교회(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목회자)에게 지급한 금품(사례비) 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종교활동비를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이다. 구분 기장한 경우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시, 교회(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목회자)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종교활동비를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구분관리의 구체적인 뜻은 종교인의 종교인소득과 종교활동비 및 기타 교회의 공금

을 각각 다른 통장에 입금 관리하고 그 사용도 가급적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2. 교회명의 통장개설 : 사례 예시

구분기장·관리의 핵심은 교회명의의 통장으로 종교단체 고유의 통장들, 종교인소득 지급통장, 종교활동비통장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교회(종교단체)가 고유번호증(82)을 부여 받으면 교회명의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다. 교회가 개설해야할 통장과 장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본다.

- **사례** : 교회에 매월 2,000만원의 헌금수입이 있고 교회 전체 지출도 2,0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한다. 담임목사에게 매월 400만원의 사례금, 부목사 2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사례금, 전도사 1명과 행정집사 1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사례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로 매월 200만원, 교회전체 경비로 월 800원 씩 지출한다. 종교인과세 대비해서 교회장부와 회계 서류를 작성하고 헌금관리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시:** 교회명의 통장(마스터 통장)에 모든 헌금(2,000만원)을 입금 또는 지출한다. 그외에 ① 교회명의의 목회자 사례비통장(또는 인건비통장), ②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통장, ③ 교회일반 경비통장의 최소한 3개의 통장을 개설한다. 회계장부도 각각 ① 목회자 사례비(또는 인건비) 장부, ②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장부, ③ 교회일반 경비 장부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교회의 마스터 통장에서 ① 사례비지급통장에 매월 1,000만원을 입금하고, ② 목회활동비 통장에 매월 200만원, ③ 교회일반통장에 매월 700만원씩 입금한다. 그리고 교회의 사례비지급통장에서 담임목사 '종교인소득전용' 개인통장에 400만원, 부목사 개인통장에 각각 200만원, 전도사와 행정집사 개인통장에 각각 100만원씩 이체한다. 그리고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통장에 입금된 200만원은 목회자가 교회명의 카드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교회로 반환한다.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는 목회자 사례비지급통장(또는 인건비통장) 또는 장부에 한정되고,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통장 및 장부와 교회일반 경비통장 및 장부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서에서 제출을 명하거나 조사할 수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222조②).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지급하는 사례비를 수령할 개인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다른 일반 통장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관리

종교인소득 과세법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이 된 부분이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의 과세와 세무조사 여부에 있었던 만큼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종교활동

비(목회활동비)를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공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4.1.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의 뜻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와는 별도로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다.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목회자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목회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주로 심방, 전도, 선교, 구제, 식사, 접대, 도서구입 등에 사용된다.

각 교회나 종교단체마다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의 이름은 다양한데, '목회비', '목회연구비', '판공비', '수양비', '접대비' 등 다양하지만 종교인소득과세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종교활동비' 또는 '목회활동비'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비과세 요건

비과세 소득으로서의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는 "종교인(목회자)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말하는데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보단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과 카드로 기록 관리 사용해야 한다.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는 목회자가 교회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고 목회자의 개인소득(사례비)이 아니므로 비과세소득임은 당연하며 금액의 제한도 없다.

종교활동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기준(정관·재정규칙)이 없거나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소위 특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종교활동비가 아니다. 또 종교인이 아닌 교회의 장로나 기타 관리집사 등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종교활동비가 아니다.

4.3.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신고 여부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해와 혼선이 많다. 종교활동비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교회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급명세서에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유형의 종교활동비를 가리키며, 두 번째 유형의 종교활동비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제12조 5.아.3)과 시행령 제12조 18.에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종교활동비 중에서 목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중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⑮에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물품과 그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교회명의의 통장과 카드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종교인의 사례비와는 관계없는 교회의 공적비용이므로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를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공적으로 관리하고 기록(교회명의 통장에 입금, 교회명의 법인카드로 사용)함으로써 지급명세서에 총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의 구분]

사용주체	유형	기장·관리	비과세	과세	신고	세무조사
종교인 (목회자)	종교단체(교회)의 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종교활동을 위해 종교인재량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금액	목회자 개인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 공금으로서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종교단체 공금으로서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신고의무 없음	종교단체 공금으로서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대상이 아님
		목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목회자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 공금으로서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하여 신고	종교인 소득에 귀속되지는 않지만 세무조사 대상
	종교단체(교회)의 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종교인에게 지급한 활동비			법령상 종교활동비에 해당하지 않음(종교인 개인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법령상 종교활동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
비종교인 (장로,관리집사 등)	종교단체의 활동비로서 종교인과세와 무관	교회공금으로 기장·관리		과세대상이 아님	신고대상이 아님	조사대상이 아님

5. 건강보험, 국민연금 - 직장가입 적용

5.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된다. 목회자들이 소속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에서 말하는 '보수'에 해당하므로 목회자들은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인 교회도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82번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으면 직장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목회자가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에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든, 원천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를 종교단체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 또는 사업장 가입 대상 자격이 부여된다.

5.2.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지역가입자로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교인소득 신고시에도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합의하여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1인 교회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되며, 종교인소득을 신고하는 유형(기타, 근로)과 고유번호증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에 따라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달라지므로 공단 관할지사에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합의하여 직장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중에 어느 소득으로 세무신고하든 국민연금 보험료를 종교단체(교회)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 또는 사업장 가입대상 자격이 부여된다.

5.3. 산재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인데 종교인(목회자)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격이 없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개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가 종교인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판례도 목회자(부목사, 전도사 포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목회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본다.

VIII. 종교인과세에 관한 정보와 자료

1. 『종교인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사)한국교회법학회가 종교인과세공동 TF의 지원을 받아 소득세법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교인과세 관련 규정 및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납세 준비를 위한 안내용 책자이다 (정가 1만원, 주문: ☎ 1600-9830).

이 책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교인소득과세 개요 : 종교인소득의 유형과 개념, 소득신고 납부절차, 세무조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순으로 설명

종교인소득과세 준비사항 : 과세대상자의 범위, 과세대상 소득 결정, 소득신고와 납부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 교회정관과 재정·회계의 정비 순으로 설명

종교인소득과세 질의응답(Q&A) : 종교인소득과세의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 설명하였음. 여기에 담긴 200여개의 질의응답은 목회자나 교회관계자들의 질문을 토대로 한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생소하고 친숙하지 않는 세금이라는 문제를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질의응답(Q&A)이 가장 효과적

종교인소득과세 참조자료 : 국민일보에 2017년 10월부터 10회 연재로 개재한 TF 전문위원들의 기고문 및 종교인소득과세 정보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 소개

부록 :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대비표,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모범정관, 종교인과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각종 대비표 및 종교인소득과세 관련서식이 담겨있다.

2. 종교인과세 교육용 동영상

교회법학회는 종교인과세를 목회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공동TF 전문위원장이며 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헌제교수의 "Q&A로 푸는 종교인과세" 강연을 녹화한 이 동영상은 1회 20분 정도의 길이의 11개 동영상으로 구성. 이 동영상은 교회법학회 미니홈피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3. 종교인과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한국교회법학회가 종교인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종교인과세 미니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종교인과세)을 만들어 필요한 자료와 정보 및 교육용 동영상 등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포털 "Daum"에서 '종교인과세'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모바일 앱이 나타난다. 이를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에 설치하면 되고, 핸드폰에서도 앱(종교인과세)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된다. 또한 교회법학회 회원으로 가입한 후 법학회(1600-9830)로 연락하면 자료이용에 관한 안내를 한다.

홈페이지와 앱에는 종교인과세 관련 최신정보 및 매뉴얼 자료와 교육용 동영상 "Q&A로 푸는 종교인과세" 11개가 들어 있다.

미니홈페이지 http://종교인과세.kr/

모바일 앱

4.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한국교회법학회

4.1.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종교인과세 시행에 대비하여 2017년 6월 한기총, 한기연, 한장총,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법학회 대표로 구성된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는 2017년 12월말로 제1기 활동을 마감하고, 2018년 1월에 제2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1기 공동TF는 종교인과세가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하는데 주력하였다면 제2기 공동TF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종교인과세 내용을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종교인과세가 잘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TF는 (사)한국교회법학회를 후원하여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을 발간하고 이를 교단과 교회연합기관을 통해 배포하였다. 또한 국세청의 「종교과세협의체」에 대표를 파견하여 기독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4.2. 한국교회법학회

(사)한국교회법학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법의 정립을 통해 교회분쟁에 대한 교리적,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교회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이다. 교회법학회는 ① 교회법/분쟁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② 학회지, 교회법 학술서 발간, 연구용역 수행, ③ 주요 교단 헌법 및 지교회 정관 연구, ④ 교단 재판, 기독교 관련 법원 판결 연구, ⑤ 종교적 이슈에 대한 법적 현안 대응, ⑥ 교단 교육기관, 신학교의 교회법 강의지원, ⑦ 종교인과세 및 교회분쟁 상담 및 자문을 하고 있다.

2013년 창립 이래 21회의 학술세미나 개최, 교회법학회지 『교회와 법』, 학술서적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발간하였고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의 전문위원 및 정부와종교간 '종교인과세협의체'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1600-9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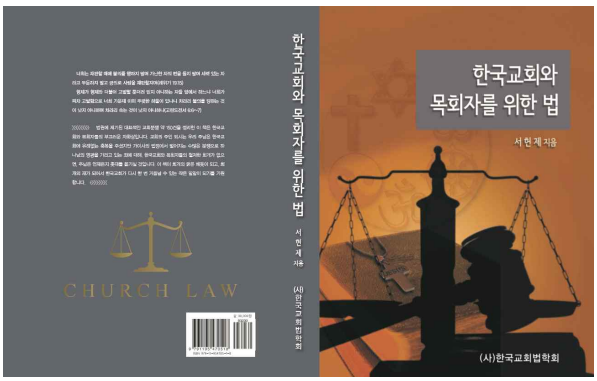

<2018 알기쉬운 종교인과세 가이드 PDF>

※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 모바일앱 종교인과세 및 각 교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